

오민수(총신대)

1. 들어가는 말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은 사람과 동물이 ‘운명공동체’(Schicksal-gemeinschaft)¹⁾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양자 모두 동일하게 창조주가 생기를 불어넣어 기동하게 되었고(시 104:4; 비고, 창 2:7), 그가 호흡을 거두시면 죽게 된다(시 49:13, 21; 전 3:19-21). 창조 시 동물은 사람과 동일한 날에 지음을 받았고, 창조주께서는 사람들처럼 동물들에게도 피조세계 가운데 그들의 거처를 정하여 주셨다. 사람과 동물은 대홍수 속에 함께 멸망하지만, 홍수 이후 노아의 언약은 공히 사람과 동

1) B. Lang, "Tier", in M. Görg /B. Lang(eds.), *Neues Bibel-Lexicon* III (Düsseldorf und Zürich: Benziger, 2001), 849-872, 851.

물을 참여시킨다(창 8:1). 홍수 이후에서야 사람과 동물 사이의 불균형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홍수 이후 동물에게 부과된 불균형은 사람보다 더 하였다. 동물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근과 가뭄, 그리고 전쟁 후유증에 재난을 겪어야 할 뿐 아니라 사람으로 통한 죄의 운명 아래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렘 14:2-6; 호 4:3; 욕 1:18ff; 학 1:11).

연구자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9절은 거시적인 문맥에서 출애굽기 19장 1절-24장 11절의 ‘시내산 계시와 언약체결’이라는 장면 안에 담겨있다. 출애굽기 19장 1절-24장 11절은 시내산 현현(출 19)에 뒤이은 10계명 선포(출 20)로 도입되고, ‘언약체결과 축하 만찬’(출 24:1-11)으로 마무리된다. 출애굽기 23장 4-5절은 ‘언약서’(출 22:22-23:33) 내에서 ‘공평에 관한 법’을 다루는 소단락(출 23:1-9)에 속한다. 본문이 사법적인 정황 가운데 주어진 포고된 규례들을 나열하고 있는 중, 4절과 5절에서 탈문맥적으로 사례법이 등장하며 길을 잃은 가축과 집에 눌린 나귀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4-5절은 현행까지 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crux interpretum)였고, 왜 ‘거짓 증거를 금하거나’나 ‘공정한 심의’를 명령하는 사법적인 주요 흐름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동물 관련 이야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의심을 하곤 하였다. 필자의 소고는 단락 전체의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기능을 확인하고 사법적인 정황을 재구성하여 4-5절의 의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현행까지 연구: 문맥적 위치와 주제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3절과 6-9절의 문맥에서 동떨어진 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 주장되어 왔다. 먼저 본문의 근접한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23장 1-3절과 6-9절은 ‘송

사’(소송)에 있어서 ‘법집행’(Rechtspflege, 법정신보존)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전자는 ‘부당한 증언’이나 ‘위증’을 금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3절; 비교, 6-9절)라는 전반부의 내용 중에 ‘공정심리’에 대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모든 심리의 과정을 공평하게 다룰 것을 명하고 있다. 송사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소송한 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선입견(6절: ‘빈곤’), ‘뇌물’의 통용(8절), 그리고 그 사람의 태생적 출신(9절: ‘이방인’, ‘나그네’)이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죄한 피를 흘려 의로운 자가 죽는 것을 금하신다(7절).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정의로운 분이시다(7절). 출애굽기 23장 1-3절이 송사의 증인(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면, 출애굽기 23장 6-9절은 그 소송 건에서 심리할 자를 그 수신자로 하고 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4-5절의 전후에는 ‘송사’(소송)와 ‘법적 심리사건’의 지침이 위치해 있다. 반면, 4절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 5절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과적하여 엎어지면 함께 일으켜 세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전후 문단의 내용적 상이성 때문에, 일찍이 벨하우젠(J. Wellhause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Die schönen Verse 23,4.5 unterbrechen den materiellen Zusammenhang von v. 1-3 und v.6-9 und sind wol nachgetragen.”²⁾ - “아름다운 구절인 23:4-5절은 1-3절과 6-9절의 소재적인 문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이후에 추가 삽입된 구절이다.” 벨하우젠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에 대대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벨하우젠의 주석은 이후 학자들에게 ‘학문적 견해일치’(communis

2)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Walter de Gruyter, 1963), 118.

opinio)로 받아들여졌다.³⁾ 그레스만(H. Gressmann)은 편집비평의 입장에 따라 본 구절이 다른 구절로 재위치시켜야 문맥적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⁴⁾ 심지어 한 랍비주석가 조차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Wie dieser und der nächste Vers hierherkommen, ist ein Rätsel. Sie unterbrechen nicht nur den Zusammenhang zwischen V. 3 und 6, es sind auch die einzigen Sätze, die wie die *mischpatim* mit *ki* anfangen.”⁵⁾ - “어떻게 이 구절과 그 다음 구절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수수께끼이다. 그들(두 구절)은 단지 3절과 6절 사이의 문맥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미쉬파팀처럼 키로 시작하는 유일한 문장들이다.” “미쉬파팀처럼 키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구약의 법전에 등장하는 ‘사례법’(casuistic law)과 정언명법한 ‘필연법’(apodictic law) 중, ‘사례법’에 해당한다. 한 단락 전체를 문법적인 성분으로 구분하고 있는 그의 관찰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4절과 5절이 이질적이라는 견해의 극단은 드라이버(Driver, 237)에서 볼 수 있다.⁶⁾ 그는 4절과 5절을 출애굽기 22장 24절이나 27절 다음 순서로 오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우트만(C. Houtman)은 출 23:4-5절이 1-3절과 6-9절의 구문 형태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까지 부서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⁷⁾

‘언약서’의 종결부분에 위치하는 출애굽기 23장 4-5절은 단지 문맥적인 위치에 있어서만 아니라 그 주제에 있어서도 문제성이 지적된다. 이 본문을 보는 일반적인 입장은 구약법전에서 ‘원수사랑’

3) G. Beer, *Exodus*, mit einem Beitrag von G. Galling (HAT 3; Tübingen: Paul Siebeck, 1939), 118; J. Schabert, *Exodus* (NEB 24; Würzburg: Echter Verlag, 1989), 96.

4) H. Gressmann, “Die älteste Geschichtsschreibung und Prophetie Israels”, H. Gunkel/ W. Stärk/P. Volz/H. Gressmann/H. Schmidt/M. Haller(eds.), *Die 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1), 226.

5) B. Jacob, *Das Buch Exodus* (Stuttgart: Calwer, 1997), 720.

6) John I. Durham, *Exodus* (WBC 3; Texas: Word Books, 1987), 330.

7) C. Houtman, *Das Bundesbuch. Ein Kommentar* (DMOAT 14; Leiden: Brill, 1997), 265.

(Feindesliebe)을 요청하는 구절로 보려는 경향이다. 베어(G. Beer)는 본 구절이 욱기 31장 29절, 잠언 25장 21절 이하를 참조하여 신명기 22장 1-4절과 비교한 끝에 출애굽기 23장 4-5절은 “사적인 원수”(Privatfeind)에 대한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⁸⁾ 야콥(B. Jacob)은 그의 기념비적인 출애굽기 주석에서 “원수사랑”이란 개념 대신 “개인적인 원수”(persönlichen Feind)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⁹⁾ 차일즈 역시 본 구절들이 “원수를 향한 행위”(conduct toward one’s enemy)¹⁰⁾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이 두 구절에 대해 “원수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개념화시킨 인물은 뵘취(B. Baentsch)이다.¹¹⁾ 오토(E. Otto)는 그의 저서 『구약의 신학적 윤리』(Theologische Ethik des Alten Testaments)에서 이 두 구절이 해당 단락의 사실적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특별권과 원수사랑의 요청”(Das Privilegrecht Gottes und die Forderung der Feindesliebe)¹²⁾이라 제목을 붙이고 있다. 오토에 따르면 원수사랑 명령은 사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윤리적인 요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슈미트(W.H. Schmidt)의 그의 저서 『구약윤리를 위하여』(Zur alttestamentlichen Ethik)에서 “원수사랑을 위한 단초”(Ansätze zur Feindesliebe)라는 항목 아래 출애굽기 23장 4-5절을 비교적 조심스럽게 묶어주고 있다.¹³⁾ 물론 “원수사랑”이란 개념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학자들도 대체적으로 이 두 구절이 다른 사람이 비록 ‘대적자’이거나 ‘적’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을 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

8) G. Beer, *Exodus*, 118.

9) B. Jacob, *Das Buch Exodus*, 720.

10) Brevard S. Childs, *Exodus*(OTL; London: SCM Press LTD, 1974), 480.

11) B. Baentsch, *Exodus-Leviticus-Numeri* (HK I/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1), 205.

12) E. Otto, *Theologische Ethik des Alten Testaments* (ThW 3.2; Stuttgart: Kohlhammer, 1994), 99-102.

13) Werner H. Schmidt, *Alttestamentlicher Glaube* (Neukirchen: Neukirchener, 1996), 142.

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의 해석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약 속에 이미 ‘원수사랑’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였는가에 대해 욥기 31장 29절, 잠언 24장 17절, 그리고 잠언 25장 21절을 참조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하겠다. 결국 구약에서 ‘원수사랑’이라는 주제가 명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수사랑을 처음 소개한 것은 신약의 나사렛 예수이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3-44)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함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7-28)

이러한 학계의 대체적인 흐름에 대한 예외도 공존하고 있다. 예외적 입장에 따르면 두 구절은 적대감이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지 않고 본문에 열거된 동물들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크뤼제만(F. Crüsemann)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Vor allem werden die Tiere in die Regeln über das Verhältnis zu den Armen und gesellschaftlichen Feinden miteinbezogen. Ihnen ist man alle Hilfe schuldig (23,4f.)”¹⁴⁾ - “무엇보다도 동물들[에 대한 규정]은 빈자나 사회적인 적에 대한 태도에 관한 규례들 내에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할베(J. Halbe)¹⁵⁾는 4-5절이 동물보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양자의 적대관계가 소송 건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한다. 하우트만(C. Houtman)¹⁶⁾은 4-5절이 동족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것을

14) F. Crüsemann,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Gütersloh, 1992), 306.

15) J. Halbe, *Das Privilegrecht Jahwes: Ex 34,10-26; Gestalt und Wesen, Herkunft und Wirken in vordeuteronomischer Zeit* (FRLANT 1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431.

16) C. Houtman, *Das Bundesbuch*, 265.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3. 본문 재조명을 위한 해석적 단초들

구문적으로 볼 때, 출애굽기 23장 4-5절을 제외하고 1-3절과 6-9절은 모두 금지명령법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출애굽기 23장 4-5절이 전후 문맥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기에는 확실하지 않다. 본 구절의 내용적 구성의 조화를 시도한 인물은 예니(E. Jenni)이다. 그는 4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아야브’(אָיַב/을 적대하다)¹⁷⁾에서 파생된 칼 능동분사 단수남성 ‘오예브’는 ‘법적인 대적’¹⁸⁾을 뜻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개인적 집단적 ‘적’을 뜻하는 말이다.¹⁹⁾ 예를 들어 사울과 다윗이 반목하고 있을 때, 사무엘상 18장 29절, 19장 17절, 24장 5절, 그리고 26장 8절의 구절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오예브’로 지칭하고 있다. 사무엘상의 용례들로 미루어 본다면, 이 두 사람은 ‘법적인 대적자’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정)적’인 것이다. 민수기 35장 23절에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에 상응된 칼형 능동분사 남성단수 ‘오예브’는 ‘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적대적인 관계’를 지시하고 있다. 어구 “악의가 없고”의 히브리적 표현은 ‘베후 로 오예브 로’(בְּהוּ לֹא אֵיבָב)이며,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는 그를 적대하지 않는다’ 또는 ‘그는 그에게 적의가 없다’이다. 그러므로 ‘아야브’의 의미는 사람 사이의 단순한 불편함이나 거북함을 넘어서는 ‘적의를 띄는 관계에서부

17) E. Jenni, “אָיַב 'ōjēb Feind”, THAT (2004), 118-122.

18) 칼형 능동분사 남성 ‘오예브’가 ‘법적인 대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구절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시 127:5)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127:5은 ‘원수’로 번역하고 있는 ‘오예브’는 성문에서 소송적 상황을 군사적인 대치 상황으로 은유하는 맥락에서 사용됨으로 ‘오예브’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재현해 주고 있다 하기는 어렵다.

19) E. Jenni, “אָיַב 'ōjēb Feind”, 119.

더 실제적인 적까지'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절의 “원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 사용된 ‘싸네’(אָנִי /미워하는 자)라는 칼형 능동분사 역시 “원수”에 대한 의미규정에 참조점을 제공하고 있다. 자주 ‘오예브’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싸네’는 적대적인 상태 중에 “정감적인 순간”(das affective Moment)²⁰⁾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두 구절의 어휘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출애굽기 23장 4-5절은 일상에서 생겨날 법한 각양의 ‘불화’, ‘반목’과 ‘적의’를 다루고 있다 하겠다. 출애굽기 23장 1-3절과 6-9절은 그 반목이 극대화되어 소송 건이 되어, 증인이 되거나 이를 심판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경우를 그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4-5절이 원래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속하지 않았다는 추측은 전후 문맥적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 타당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입장은 출애굽기 23장 4-5절(사례법)이 전반부(1-3절)와 후반부(6-9절)를 서술하고 있는 필연법과 문체적인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설득력을 지닌다. 고든(Cyrus H. Gordon)의 연구²¹⁾에 따르면 두 가지 양식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은 고대오리엔트 문헌에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다. 본 구절을 연구한 차일즈는 문체와 장면과 내용의 차이들을 관찰한 후, 어법적인 긴장대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the shift from the prohibitive style into a positive formulation points to the parenetic style of homily.”²²⁾ - “문체적으로 금지형에서 긍정적인 형식의 변환은 훈계적인 설교스타일임을 지적한다.” 프로프 역시 이러한 문체적 변환은 유사-법정적 언어에 웅크리고 있는 설교라고 말하고 있다. “this is preaching couched in quasi-legalistic

20) E. Jenni, “אָנִי ḥassen”, THAT II (2004), 835-837.

21) Cyrus H. Gordon,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Norton, 1965), 83.

22) Brevard S. Childs, *Exodus*, 481.

language.”²³⁾

그러므로 4절과 5절이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단락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부터 필자는 단락 내에서 두 구절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락의 구문들을 구조적으로, 수사적으로 접근하고 단락 내의 정황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4. 단락의 의도파악

1) 구조적 접근과 그 이해

[개역개정] 출애굽기 23장 1-9절

-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 (2절) 다수를 따른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 (4절)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 (5절)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옆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절)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23) William H.C. Propp, *Exodus 19-4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a; New York: Doubleday, 2006), 275.

말을 굽게 하느니라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텔렉체: 구절이 불변화사 *כִּי(키/왜나하면)로 도입하는 경우를 표시

본 단락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1절) 직접 위증: 풍설 + 악인과 연합
- B. (2절) 간접 위증 - 다수에 따른 악행
- C. (3절) 가난한 자의 송사 불편부당 재판
 - X. (4-5절)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가축상실과 그 위태함
- C'. (6절) 가난한 자의 송사 (7절) 불편부당 재판
- B'. (8절) 편벽재판의 간접원인: 너물
- A'. (9절) 편벽재판의 직접원인: 이방인

A와 A'는 '증인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A는 증인이 될 소시민의 입장에서 '거짓된 풍설'과 자의적인 '악인과의 연합'을 거론하고 있다(1절). '거짓된 풍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어구는 אָשׁוּב וְנִשְׁבַּח(쉐마 쇠베)로 허탄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를 직역하면, '너는 너의 손을 악한 자와 더불어 두지 말라'²⁴⁾이다. 이차적으로는 증인으로 호출되어 서게 될 사람의 도덕적 품성을 유념할 것을 말한다. '너의 손'이라 구문 אָשׁוּב(아테카)에서 '손'은 신체적인 손을 의미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ability, power)을 의미한다. 어의변천학(semasiology)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본다면, '너의 손' > '너

24) HALAT, 370b는 어구의 의미를 "gemeinsame Sache machen"(협작하다)로 제한한다.

의 기력' > '너의 능력'(비교, b) β 와 c), HALAT, 371a)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본 명령은 악한 자와 연합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쏟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법정적 차원에서 '손'이 사용될 수 있는데, 증인이 될 사람이 손을 들어 맹세하는 경우이다(비교, 창 14:22; 신 32:40; 단 12:7; 계 10:5-7). 후자일 경우, 1b는 증인이 될 수신자가 야훼의 이름으로 맹약하며 악한 자와 연합하여 עֵד הַצָּדִיק (에드 하마스/"Zeuge des Unrechts", 불법적인 증인)를 발언하려는 경우이다 (עֵד הַצָּדִיק "폭행/불법", HALAT, 316). 1ba 표현 속에는 주요 증인이 될 수신자가 주도하는 자의적인 활동을 함의하고 있다. 9절의 A'는 '재판을 시행해야 할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모종의 '거짓된 풍설'이 외국인이나 타국인이 가진 이국적임(이질성)을 통해서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본다면, A의 '거짓된 풍설'을 금하는 경고와 맥을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방인'에 해당하는 גֵּר (게르)는 이스라엘 내에 여러 가지 사정(전쟁, 기근,疫病, 피의 복수 etc.)으로 인해 자신의 마을이나 지파를 떠나 온 '보호민'(Schutzbürger, HALAT, 193b)을 뜻하는 말이다. 아브라함과 헛 사람과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거래할 때를 살펴보면, 이들은 객(나그네)이지만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창 23:4). 그러나 그들에게 있던 미약한 법적권한이 혈통이나 인종의 다름으로 인하여 침해되지 말아야 할 것을 9절은 말하고 있다.

B(2절)와 B'(8절)는 '거짓 증인'이나 '편벽재판'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B의 경우는 수신자가 다수와 연합함으로써 편벽재판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2절에 나타난 히브리 본문에서는 רַבִּים אַחֲרָיו (아하레 랍빔/많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을 전반절과 후반절에 각각 사용함으로써 대중이나 다수가 송사를 굽히는 증인과 증언을 바꿀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B'의 경우(8절)는 '뇌물수수'를 말하고 있다. 뇌물수수는 재판 현장에서는 알

수 없으나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간접적인 경우라 하겠다. 다수의 경우(2절)와 달리 소수의 금권(8절)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חָרָשׁ (쇼하드/뇌물)에 해당된다.

C와 C'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송사를 편벽됨 없이 시행할 것을 말하고 있다. 국역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C'의 '가난한 자'(6절)는 עֲבֹרֹן (에브론/빈한)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며, 법적이고 선지자적인 맥락에서는 '수탈'(착취)당한 사람'을 의미한다(비교, 신 12:1-5; 24:14; 암 2:6; 4:1; 5:12; 8:4,6; 렘 2:34; 5:28; 22:16; 겔 16:49; 18:12; 22:29).²⁵⁾ 이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이나 형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시 109:16; 신 15:5).²⁶⁾ C에서 '가난한 자'(3절)는 דָּל (달/미약한, 미천한)로, '달'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공히 사용되지만 비종교적인 영역과 주로 관계가 있다.²⁷⁾ '에브론'(6절)은 절대적으로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된 반면, '달'(3절)은 형용사의 수식적 용법으로 가축이나 사람에게 공히 사용되는 말이다("약하고", 창 41:19; "빈민", 렘 39:10)²⁸⁾ '달'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이 두드러진 이들로써 전적으로 가련한 이들을 지칭한다.

X는 문체적(필연법 vs. 사례법)이고 문법적인 입장(부정명령 vs. 긍정명령)에서 전후의 내용들과는 차이가 있다. 길 잃은 원수의 가축(소나 나귀)를 보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4절)과 짐을 부리는 짐승이 주저앉을 경우 일으켜 세워주라(5절)는 명령은 모두 2인칭 남성 단

25) E. Gerstenberger, "אֲבֹרֹן 'hb wollen", THAT I (2004), 20-25; 23-24. 지혜문학적인 맥락에서 '에브론'은 부함과 대비되고 있으며 물질적인 비참함을 그려주고 있다.

26) David J.A. Clines(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I*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04.

27) E. Gerstenberger, "אֲבֹרֹן 'hb wollen", THAT I (2004), 20-25; 23-24; Ernst Jenni, "עֲבֹרֹן 'nh II elend sein", THAT II (2004), 344-346. '에브론'와 '오니'의 차이를 참조하라.

28) David J.A. Clines(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II*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437.

수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A와 A', B와 B', 그리고 C와 C'는 금지명령이라는 소극적인 형태의 예방조치인 반면, X는 유일하게 긍정 명령으로 '적극적인 형태의 조치'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화자는 예시를 들어 회화적으로 그려주고 있고 갈등에 휘말려 있는 당사자들이나 청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4절과 5절 전반부(protasis)에 각각 한 번씩 현재 능동 분사, הֹלֵךְ (토에/길을 잃고 방황하는)와 יָשֵׁב (로베츠/누워있는)를 사용한다. 완전동사(fullverb)와 현재 능동 분사(pte. act.)이 결합하는 동사 구문²⁹⁾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대상이 어떻게(wie/how) 동작하고 있는지 회화적으로 그려주는 효과를 지닌다. 화자는 이러한 구문론적 기법을 통해서 동물이 처한 위대한 현장을 생생(vivid, actual)하게 그려 주어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로 통하여 가여운 동물에 대한 감정 이입효과를 주고 있다.

2) 구문으로 통해서 본 단락 내의 수사적 지평

출애굽기 23장 1-3절과 6-9절은 공통적으로 금지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절은 근거절이 없는 체 단순한 금지명령으로만 5회 연속해서 이어지는 반면, 6-9절의 4회 연속되는 금지명령은 매번 내용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6-9절은 각각 근거부사절 כִּי (키/왜냐하면)를 후행 삽입하여 청자로 하여금 그 근거로 통해서 설득하여 명령을 받게 되는 수신자의 의지를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29) Rüdige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Mit einem Anhang Biblisches Aramäisch* (Zürich: Theol. Verlag, 1994), 64: "PS[Partizipialsätze] berichten vielmehr in der Regel von einer Handlung des Subjekts, die zu dem in Rede stehenden Zeitpunkt gerade abläuft, [...] im Blick auf die Aktions- bzw. Ablaufart die Dauer(Durativ)" - 분사문장은 보통의 경우 발화시점에 이제 막 시행되고 있는 주어의 행위를 보도하고 있다. 동작상으로 볼 때, 현재 능동분사는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다.

러한 수사적 기법은 다음과 같다.

구문론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의 송사에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는 6절은 7절(‘미드바르 쇠케르 מִדְּבַר שֹׁכֵר, 기만하는 일/사기행각]를 멀리하라는 명령’)과 ‘비접속구문’(asyndeton)으로 연결되어 있다. 접속사 ו(바브/그리고)로 연결되지 않는 비접속구문은 선행하는 구절이나 어구에 대한 ‘상세한 해설’³⁰⁾의 기능을 하고 있다.³¹⁾ 이러한 해설은 청자로 하여금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설득해 준다. 또한 이어지는 7절 후반절은 단순히 ‘금지형’(vetitive)을 사용하여 청자로 하여금 ‘절대금지’(prohibitive)나 ‘명령조’(injunctive)보다는 ‘설득(권고, 권유)’하는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화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존하는 금지형은 후속하는 근거절 ‘키’ 구문으로 두 단계에 거쳐 강하게 신학화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본 절의 화자는 ‘거짓된 일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명령의 ‘수신자 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놓고 있어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כִּי לֹא אֲמַנְיִיק רָשָׁע) 두 번째 단계에는 화자(외적 화자)는 7a-7ba까지 강한 설득과 강한 호소를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7bβ에서 ‘(야훼) 하나님’(내적 화자)이라고 밝힌다. 하나님은 무고하고 의로운 자를 살해한 것을 결단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출현은 이 금지명령의 필히 실현되어야 할 절실함을 표현한다.

필연법을 설득력 있게 보장하는 작업은 8절에도 역시 나타난다. ‘너물을 취하지 말라!’ 라는 필연법은 근거절인 ‘키’로 역시 보장되고 있다. 너물을 금지하는 이유는 너물은 사람이 뜯 눈으로 있다 할지라도³²⁾ 그

30) Carl Brockelmann, *Hebräische Syntax* (Neukirchen: Neukirchener, 22004) 142, 139.

31) syndeton과 asyndeton의 의미론적 차이에 대해,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구약논단』 20집 (2014년 12월), 281-308을 참고하라.

32) LXX의 맛소라 본문에서는 피엘형 복수 ‘피크덤’(עִיָּקָם/보) 대신에 복수 ‘오탁무스 블레포톤’(ὀφθαλμοὺς βλεπόντων/보는 자들의 눈들)으로 삽입하여, 맛소라 본문(8절)의 의미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LXX의 ‘보는 자들의 눈들을 어둡게 한다’란 어구는 심판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눈 뜯 맹인으로 만든

사람들을 맹인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의로운 자의 말(일, 사건)을 굽게 하기 때문이다. 8b β 와 7b β 는 어근 ‘차데-달렛-코프’(קדצ)를 사용하여 단락을 종결짓게 함으로 두 구절의 연관성을 주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야 할 일임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9절은 이방인의 압제를 금하는 필경법 조항인데, 9a에서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절대금지 명령 이후 9b α 는 ‘베아템 예다템 에트 네페쉬 핫게르’(וְאַתֶּם יְדַעְתֶּם אֶת-נַפְשׁ הַגֵּר הַזֶּה) / 너희 스스로가 나그네의 그 사정을 이미 알고 있다)를 말하고 있다. 9b α 는 선행시제 (Vorzeitigkeit)³³⁾를 표현하는 구문 we-x-qatal³⁴⁾과 결과동사(verba resultativa)인 ‘야다’를 사용하고 있다. 결과동사는 화자가 말하는 현시점까지 효과를 미치는 현상을 표현함으로 문맥에 따라 현재로 번역이 가능하다. 특별히 독립인칭대명사 ‘아템’(אַתֶּם / 너희)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화자인 야훼가 이방인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청자인 ‘너희’임을 언급하며, 앞선 하나님의 요구(‘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할 수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절대금지 명령의 화자인 야훼는 이어지는 9b β 에서 근거절을 도입하는 불변사 ‘키’를 사용하여 한 번 더 보강하고 있는데, 지금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출애굽기 23장 1-3절과 6-9절의 금지명령의 구문을 간략히 비교하여 본 결과, 1-3절에 비해서 6-9절은 설득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수신자인 ‘너’에게 강하게 호소됨을 볼 수 있다. 단순한 금지라는 의무조항에서 설득적인 요소가 첨가되어 어법의 변화가 일어나

어 버리는 일종의 ‘기만술’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그 뇌물은 ‘디브레 핫디킴’(דִּבְרֵי חַטִּיּוֹת / 의로운 자들의 말들, 의로운 자들의 일들)을 굽게 하는 파급효과를 지닌다. 맛소라의 독법은 ‘뇌물은 보고있는 자들을 어둠게 한다’는 재판을 하는 당사자 또한 뇌물의 희생자에 포함됨을 말한다.

33) Rüdige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206.

34) 담화체를 위한 동사구문론 활용에 대한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281-308을 참고하라.

는 것은 4-5절에 나타나는 사례법과 무관하지 않다. 4-5절의 사례법은 1-9절까지의 단락의 흐름을 중단시키려는 기법이기 보다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잠깐의 휴지기를 두고, 이치를 분별하여 사례를 살피려는 수사적 장치일 수 있다. 예시를 들어주는 사례법은 앞에서 차일즈와 프로프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포고 중 훈계조(parenetic)의 설교적(homiletic)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4-5절의 사례법은 6-9절의 호소력을 지닌 강한 설득을 하기 위한, 예시적 단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3장 1-3절과 연관하여 1-9절까지의 필연법의 전개를 내용적으로 요약하면 수사적인 어조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9절) 필경법과 강력한 호소

⇒ (4-5절) 사례법적 설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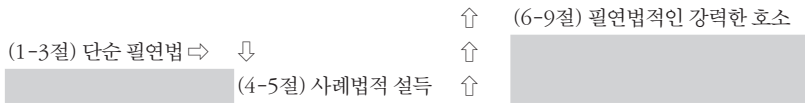
(1-3절) 단순 필연법

이러한 단락의 어법의 전개를 볼 때, 1-3절은 포고형식으로 내용을 일반화시키고 있으며, 4-5절은 청자상황에 따른 구체지침을, 그리고 6-9절은 청자를 향한 호소력을 지닌 강한 포고형식으로 필연법 내용들을 점층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음악적인 기법으로 변환하여 이해해 본다면, 4-5절은 일종의 싱코페이션(syncopation) 효과³⁵⁾를 자아내어, ‘의도적인 약박’(사례법)이 이어지는 ‘강박’(필연법)과 결합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외성’과 ‘활기’와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기법적인 효과에 대한 필자의 논지를 이어지는 사법적인 정황을 그려본다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³⁶⁾ 기법적 효과를 도식화 하면 다음

35) “음악-싱코페이션”, <http://tip.daum.net/question/276085>

36) 필연법(부정명령)-사례법(긍정명령)-필연법(부정명령)의 순서는 심계명에서도 나타난다. 3개의 부정명령-2개의 긍정명령-5개[6개]의 부정명령으로 마무리된다. 출 23:1-9과 부정으로 시작하여 부정으로 마무리 되

과 같다.



고대에서 철학적 단계에서부터 수사학과 음악적 기법 사이에는 합일 현상이 있어 왔다.³⁷⁾ 음악과 마찬가지로 수사학의 주된 목적은 듣는 이의 ‘정감’(affection)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수사학은 시간적인 형식(temporal form)의 개념 및 적절한 어휘들을 제공한다면, 음악은 선율에 기법(모호하거나 불협화음적 화성, 예상 밖에 쉽표, 다이내믹의 변화, 당김음, 음보와 시적 운율 etc)을 사용하여 감정표현을 담아 도약하고 있다. 수사학의 원리가 음악의 문법으로 널리 퍼진 것은 바로크시대 이후이나, 동일한 원리가 내러티브 기법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설득의 기술로서 수사학 역시 “감정표현을 담은 대화의 기술”(art of expressive discours)³⁸⁾로, 사랑, 분노, 슬픔 등과 같은 보편적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니는 심적 상태, 느낌, 반응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음악의 수사적 기법이 구약 문서에 기술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수사학은 ‘화자’와 ‘청자’라는 세팅을 기본으로 하여 설득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수사적 정황은 화자인 모세(또한 야훼)와 청자인 이스라엘 백성

는 것은 출 23:1-9과 유사하나, 십계명은 모두 필연법의 형태로 진술되었다는데 그 독특함이 있겠다.
 37) 참고. 산드라 P. 로젠바움, 『고전파 피아노 음악의 연주』 (김경임 옮김),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2), 36-46. 원제는 Sandra P. Rosenbaum, *Performance Practices in Classic Piano Music: Their Principles and Applications*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38) 산드라 P. 로젠바움, 『고전파 피아노 음악의 연주』, 38. 요한 J. 퀴츠(Johann Joachim Quantz)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용변가와 음악가는 근본적으로 같은 목적을 지닌다. … 즉 자신이 청중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그들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잠재우며, 그들을 이제는 이런 감정으로 그리고 이제는 저런 감정으로 옮겨주고자 한다.” (39)

들에게 언약법전을 선포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처음 생생한 구두적 선포인 ‘연설체’가 ‘담화체’로 기록되어 질 때는 애초에 청자를 설득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기술적인 장치들은 단지 ‘문체나 어법적인 전환’ 정도로만 남겨질 수밖에 없게 된다. 구약의 문서들은 크게 나누어 산문체인 ‘내러티브’와 운문체인 ‘시가’ 장르로 구분될 수 있겠지만, ‘내러티브’ 역시 ‘이미 들려주었던 이야기’거나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실용적인 성격을 고려한다면 듣는 이의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사학적 성격이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준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내러티브는 청각적 효과를 야기하는 음악적인 장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사법적인 정황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기 23장 4-5절이 사례법(casuistic law)이 아닌 필연법(apodictic law)의 형식을 따른다는 이유로, 두 구절이 다른 본문에 속해 있음을 주장하여 왔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4-5절은 1-9절의 사법적인 규례를 포고하는 정황 속에 필요한 구성요소로 볼 때, 필수적인 자리를 점하고 있다. 1-3절의 필연법의 화자는 증인을 수신자로 하고 있는 반면, 6-9절의 수신자는 판결자이다. 말하자면, 고대 이스라엘의 (증거재판주의의) 사법적 상황에서 보면 증인과 (심)판관이 소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적인 상황에서 세 번째 구성요소로서 갈등에 얽힌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는 본문의 묘사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4-5절에 나타난다. 두 사람과의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어떠한가는 3절의 오이브카(אִיבְכָא/네 원수)와 쏘니아카(שׁוֹנֵיָא/네가 미워하는 자)로 감정적이며 적대적임을 알 수 있다.

4) 단락(출 23:1-9) 이해의 요약

필자의 연구 4. 1), 4. 2), 4. 3)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4절과 5절은 교차대칭구조(chiasm)에 X 부분을 접하고 있으며, 수사적 차원에서 이어지는 6-9절의 강력한 설득적 필연법을 위한 기법적인 단초로 싱크페이션 효과를 만들어낸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사법적인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면, 1-3절은 증인, 4-5절은 당사자들, 6-9절은 (심)판관을 차례대로 등장시켜 주고 있다. 본 단락의 (외적 화자인) 서술자는 이러한 기법으로 통하여 단락 전체가 일목요연하고 현장감 있게 들려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서술자는 4-5절의 전반부(1-3절)와 후반부(6-9절)에 어법적으로 소극적인 부정명령을 위치시키고 동심원의 중앙에는 ‘적극적 긍정명령’을 둬므로, 소송 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웃과의 분쟁에 대한(또는 대비한) 능동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시각화시켜 주고 있다.

5. 분쟁의 해소와 화해의 장으로 동물배려

כִּי תִפְגַּע שׂוֹר אֹיְבֶיךָ אוֹ חֲמֹרוֹ תַעֲנֶה ki yiqtol
 הָעֹב מִשְׂבִּיבוֹ לּוֹ: ׀ qatul yiqtol
 네가 만일 너를 적대하는 자의 소나 나귀를 길 잃은 것을 만나거든 (4절)
 너는 필히 그 짐승을 그에게 돌려주어라

כִּי-תִרְאֶה חֲמֹר שְׂנֵאָוֶךָ רֹבֵץ תַּחַת מַשְׂאֵוֶךָ ki yiqtol weqatal,
 וְחִדַּלְתָּ מֵעֹב לּוֹ עֹב תַעֲזֹב עִמּוֹ: ׀ qatul yiqtol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자기 짐 밑에 눌러있는 (5절)
 것을 보거든
 그 짐승을 내버려두지 말고 성실히 그와 함하여 (그 짐승을)
 일으켜 세우라

4절과 5절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의 가축들을 마주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4절과 5절의 각각 동사의 목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4절 וַיִּצַד (과가/마주치다)의 동사의 목적어는 שׂוֹר (소르/소)와 חֲמוֹר (하모르/나귀)이며 ‘너를 적대하는 자’와 연계형으로 연결되어 그와의 관계를 단지 수식적으로 두고 있다. 5절에서 화자인 ‘너’의 눈에 처음 들어와 보이게 된 것은 חֲמוֹר (하모르/나귀)이다. ‘나귀’ 역시 ‘너를 미워하는 자’와는 연계형으로 연결되어 수식하는 용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은 공히 동물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지 그 동물의 소유주가 적대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일뿐임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지침은 길 잃은 소나 나귀의 경우 주인에게 돌려주며, 나귀가 과적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을 경우 그 짐승을 떠나지 말고 그 소유주와 연합하여 도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침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4절과 5절의 하반부(apodosis)에서 각각 *figura etymologica*(동일어근반복)로 연표하여 강조하고 있다. 위의 문장의 구성요소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4절과 5절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두 구절 모두 ‘동물보호규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³⁹⁾ 율법은 수확 시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명을 씌우지 말 것(신 25:4; 고전 9:9)과 집안의 가축 역시 안식일의 휴식(출 23:12; 신 5:14)에 참여하도록 하여, 피조물인 동물에게도 권리를 부여한다. 신명기 22장 1-4절에서는 그 소유주가 ‘적대적인 사람’이나 ‘미워하는 자’ 대신에 단지 ‘형제’라고 소개한다. 신명기의 해당구절은 언약서의 규정을 재해석하여 들려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23:4-5절은 ‘적대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란 극단적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동물보

39) Hans J. Boecker, "Feindesliebe" im alttestamentlichen Recht?, A. Grauper/H. Delker Alexander/B. Ernst(eds.), *Verbindungslinie: Festschrift für Werner H. Schmidt zum 65. Geburtstag*(Neukirchen: Neukirchener, 2000), 19-25.

호' 계명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⁴⁰⁾

소와 나귀는 집에 길들여진 짐승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경우 쉽게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전락된다. 4b의 명령에 따르면 설령 이런 짐승이 지금 자신에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돌려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과적한 나귀가 기력에 진하여 주저앉을 경우 그의 주인이 나귀를 일으켜 세우려하던 아니면 과적한 짐을 내리려 하던 이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5b는 집에 눌러 식은 땀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짐승을 구경하지 말고 설령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협력하여 그 짐승을 세우라는 것이다. 가축에 대한 '자비와 돌봄'⁴¹⁾은 고대 사회에서 가축이 큰 재산이었고 경지를 경작하는데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는 주요 수단이었음을 감안하면, 본 절의 명령은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창조신학적인 맥락에서 동물은 그를 다스리는 사람과 같은 운명으로 묶여 있는데⁴²⁾, 특별히 반목 관계있던 사람의 소유권 하에 있던 동물의 위기는 곧 그의 소유주의 운명의 위기일 수 있다.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물이 위태한 지경이 되며 경작과 소출뿐만 아니라 생계와 생활의 터전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다.⁴³⁾ 이러한 측면에서 동물보호는 이웃과의 분쟁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분쟁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의 갈등은 존재의 위협에 처한 동물을 불쌍히 여겨 되찾아 주거나 그 사람과 연합하여 돕는 행위로 해소되어진다. 따라서 4절과 5절에서

40) 동물보호 계명의 극대화 차원에 국한하여 본다면, 지속된 사람내부의 적대감이 동물에 대한 배려를 침해할 수 없다는 뵈커(Hans J. Boecker)의 견해는 일정정도 타당성을 얻는다. Das heißt nämlich, daß die geforderte Fürsorge für die Tiere auch durch bestehende innermenschliche Feindschaften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darf (Hans J. Boecker, "Feindesliebe", 23)

41) 강철구의 연구에 따르면,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물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간주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동물들, 즉 자신의 창조물들을 돌보시는 '동물들의 보호자'와 '부양자로서 묘사한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피조물들을 자상하게 돌보심으로 전체 세상을 통치하신다." 강철구,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3집 (2017년 3월), 139-164, 152-153.

42) 구자용은 창세기 1-2장 연구에서 동물이 사람과 더불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구자용, "아웨, 동물의 주", 「구약논단」 21집 (2015년 6월), 205-235, 209-223.

43) B. Lang, "Tier", 852.

동물보호의 계명이 적대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다.⁴⁴⁾ 또한 분쟁극복의 차원에서 고려해 본다면, 적대적인 상대의 소유권 하에 있는 동물을 배려해줌으로 간접적인 화해의 통로가 마련됨을 볼 수 있다.

6. 동물보호의 의의

제의법은 계명을 어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불화를 해소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화목의 방편은 생축을 희생하여 바친 피였다. 이와 반면, 언약서는 삶의 질서를 다스리는 지혜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운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⁴⁵⁾ 동물(가축)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여준다.⁴⁶⁾ 이러한 창조 신학적 맥락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물의 위기는 비록 그 짐승이 소유물이기는 하나, 그 사람과 운명을 같이함으로 곧 소유주 자신의 위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의 가축의 위기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그 소유주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한편, 적대적 관계에 있는 가축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두고 1-3절과 6-9절의 법정소송에서 필연법적인 금지명령을 다시 살펴본다면, 4-5절에 예시된 능동적 행동이 분쟁해결에 효과적임이 더욱 부각된다. 법정은 악한 자들의 연합과 위증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심)판관(들)의 평결은 너물로 오용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적

44) 필자의 견해와는 달리 후스턴(W. Houston)은 출애굽기 주석에서 4-5절이 완전한 불편부당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w.4,5, which do not seem to fit this theme, underline the requirement of total impartiality”, Houston, W., “Exodus”, J. Barton/John Muddiman(eds.), *The Oxford Bible Commentary*, 84.

45) 구자용, “아웨, 동물의 주”, 『구약논단』 21집 (2015년 6월), 205-235, 209-223.

46)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잠 12:10)는 동물에 대한 태도에서 사람의 긍휼의 성격이 규정됨을 잘 설명하고 있다. 욥 38-42장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던 욥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는 ‘동물’이란 매체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대관계 있는 사람의 동산인 생축을 보호하고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정의구현을 초월하는 온전한 공동사회를 현실화시켜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사람 사이의 분쟁의 문제는 당사자의 개인의 인간중심적 사고에서부터 탈피하여 피조물 중 또 다른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해방되었을 때 그 종식이 가능할 것이다.⁴⁷⁾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웃의 소유권 하에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갈등과 분쟁을 넘어 화목케 되는 일의 접경일 것이다.

7. 나오는 말

출애굽기 23장 1-9절은 전체적으로 사법적인 면에서 불편부당한 공정한 심리를 위한 증언과 판결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는 오경 중 ‘언약서’에 속하는 본 단락의 문학적인 통일성과 내용적인 조화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석적인 입장에서 조화를 시도하는 노력 이외에 학계의 무언의 합의가 있다면, 4-5절의 구절이 문체적(필연법 vs. 사례법)이고 어법적(부정명령 vs. 긍정명령)인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4-5절의 구절들이 전체 단락과 불일치 한다는 입장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였다. 연구자들은 신약의 계시의 빛 아래서 ‘원수사랑’이란 계명과 연결하여, 사법적 언술이 지배적인 전체단락과 조화를 시키고자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화자와 수신자라는 선포적 정황 속에서 수사적 지평을 간과한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출애굽기 23장 1-9절을 구조적으로 접근한 결과, 본 단락은 교차대칭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그 중심에 4-5절이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4절과 5절은 이웃과의 분쟁에 대한 적

47) 하경택은 욥기의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야기(욥 40:15-41:43)가 욥의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세계중심적 세계관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하경택, “창조와 종말’ 주제를 위한 동물의 신학적 의의(意義)”, 『구약논단』 14집 (2008년 12월), 126-146, 140.

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시를 사례법으로 진술해 주고 있다. 수사적 지평에서 23장 1-9절은 ‘단순 필연법’(1-3절) → ‘사례법적 설득’(4-5절) ⇒ ‘필연법적인 강력한 호소’(6-9절)의 구도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기법적으로 근거문을 사용하여 설득력을 더하며 또한 내적화자로서(야훼) 하나님을 등장시킴으로 강한 호소력이 있는 필경법이 되게 함을 관찰하였다. 4절과 5절은 약박에 해당하는 사례법과 이어지는 6-9절의 강박(필연법)에 대하여 의도적 휴지기를 두어, 싱크페이션 효과를 자아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이웃 간의 반목과 분쟁이란 소주제에 감싸여 있는 동심원구조의 핵심 위치에 있는 동물보호에 대해 그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4-5절은 사람 상호간의 극단적인 상황(원수와 미움관계)을 설정하여, 동물보호의 계명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물보호계명이 사람 상호간의 갈등과 분쟁의 해소하는 화해의 장이 됨을 확인하였다. 필자의 연구 결과, 동물보호계명은 제의적 동물희생과는 달리 지혜적 차원에서 적대감을 극복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은 동물보호계명이 법정 소송의 여지조차도 불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예시적으로 그려주고 있다.

8. 참고문헌

- “음악-싱크페이션”, <http://tip.daum.net/question/276085>.
- 강철구,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3집 (2017년 3월), 139-164, 152-153.
- 구자용, “야훼, 동물의 주”, 「구약논단」 21집 (2015년 6월), 205-235, 209-223.
- 산드라 P. 로젠바움, 『고전과 피아노 음악의 연주』 (김경임 옮김),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2). 원제는 Sandra P. Rosenbaum,

www.kci.go.kr

- Performance Practices in Classic Piano Music: Their Principles and Applications*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구약논단』 20집 (2014년 12월), 281-308.
- 하경택, “‘창조와 종말’ 주제를 위한 동물의 신학적 의의(意義)”, 『구약논단』 14집 (2008년 12월), 126-146, 140.
- Baentsch, B., *Exodus-Leviticus-Numeri* (HK I/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1).
- Bartelmus, Rüdiger,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Mit einem Anhang Biblisches Aramäisch* (Zürich: Theol. Verlag, 1994).
- Beer, G., *Exodus*, mit einem Beitrag von G. Galling (HAT 3; Tübingen: Paul Siebeck, 1939).
- Boecker, Hans J., “„Feindesliebe“ im alttestamentlichen Recht?”, A. Grauper/ H. Delker Alexander/ B. Ernst(eds.), *Verbindungslinie: Festschrift für Werner H. Schmidt zum 65. Geburtstag* (Neukirchen: Neukirchener, 2000), 19-25.
- Brockelmann, C., *Hebräische Syntax* (Neukirchen: Neukirchener, 2004).
- Childs, Brevard S., *Exodus* (OTL; London: SCM Press LTD, 1974).
- Clines(ed.), David J. A.,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I*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04.
- Clines(ed.), David J. A.,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II*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437.
- Crüsemann, F.,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Gütersloh, 1992), 306.
- Durham, John I., *Exodus* (WBC 3; Texas: Word Books, 1987), 330-331.
- Gressmann, H., “Die älteste Geschichtsschreibung und Prophe- tie Israels”, H. Gunkel/ W. Stärk/P. Volz/H. Gressmann/ H. Schmidt/M. Haller(eds.), *Die 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1).
- Gerstenberger, E., “אבה ’hb wollen”, THAT I (62004), 20-25; 23-24.
- Gordon, Cyrus H.,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Norton, 1965).
- Halbe, J., *Das Privilegrecht Jahwes: Ex 34,10-26; Gestalt und Wesen, Herkunft und Wirken in vordeuteronomischer Zeit* (FRLANT 1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 Houston, W., “Exodus”, J. Barton/John Muddiman(eds.), *The Oxford Bible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Houtman, C., *Das Bundesbuch. Ein Kommentar* (DMOAT 14; Leiden: Brill, 1997).
- Jacob, B., *Das Buch Exodus* (Stuttgart: Calwer, 1997).
- Jenni, E., “אִיב־ ’ōjēb Feind”, THAT (62004), 118-122.
- Jenni, E., “ענה ’nh II elend sein”, THAT II (62004), 344-346.
- Jenni, E., “שנא śn’ hassen”, THAT II(62004), 835-837.
- Koehler, L./ Baumgartner,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I,II (HALAT I,II; Leiden: Brill,

- 2004),
- Lang, B., “Tier”, M. Görg/ B. Lang(eds.), *Neues Bibel-Lexicon III* (Düsseldorf und Zürich: Benziger, 2001), 849-872.
- Propp, William H.C., *Exodus 19-4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a; New York: Doubleday, 2006).
- Otto, E., *Theologische Ethik des Alten Testaments* (ThW 3.2; Stuttgart: Kohlhammer, 1994).
- Schabert, J., *Exodus* (NEB 24; Würzburg: Echter Verlag, 1989).
- Schmidt, Werner H., *Alttestamentlicher Glaube* (Neukirchen: Neukirchener, 1996).
- Wellhausen, J.,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Walter de Gruyter, 1963).

검색어

언약서

동물보호

자비

수사적 양식

구문론

A Supra-Juristical Conciliation Place: Animal Protection

- Exodus 23:4-5 and His Context -

Minsu Oh

Lecturer at Chongshin University

Kiel University Dr. theol.

This study aims to research Exodus 23:4-5,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crux interpretum on account of its different style and content within the literary context of Exodus 23:1-9. Comparing with Exodus 23:1-3 and 6-9, the verses 4-5 are casuistic laws with positive imperatives.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its content, 'love of enemies' (or 'overcoming personal enmity') or 'animal protection.' On the contrary, its surrounding verses deal with only juristic issues. Thus, many scholars tried to separate verses 4-5 from the current unit of the MT and to reposition them. On the basis of the syntactical and structural analysis, I approached the literary unit of Exodus 23:1-9, highlighted its rhetorical dimension, and re-constructs its juristic setting.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reached: First, Exodus 23:1-9 has a chiasmic structure, with verses 4-5 as the center, which commands us to deal with lost and endangered animals or overloaded lying ones (vss. 4-5). Second, the rhetorical orientation of the text moves from the 'simple apodictic style' over the 'persuasive casuistic style' to the 'apodictic style with strong appeals.' Third, the so-called syncopation effect of the deliberative pause in verses 4-5 lays an emphasis on verses 6-9. Fourth, The subject of animal protection (or love) in verses

www.kci.go.kr

4-5 does not interfere with the flow of the text but rather leads to reconciliation of the people who are in a hostile relationship.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animal protection (vss. 4-5) be a more effective and active alternative for overcoming sins, as compared with the ritual of sacrificial animals. I came to have the view that verses 4-5 with a quasi-legalistic language are a necessary part in the juristic context of Exodus 23:1-9 and demonstrate a super-juristical conciliation place, that is, 'animal protection'.

Keywords

book of the covenant

animal protection

mercy

rhetoric style

syntax

- 투고일: 2017년 4월 21일
- 심사일: 2017년 4월 22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8일